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2. 조치일 : 2025. 12. 8.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회사(은행 등) 지원성 사업을 고려한 자본계획 마련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하는바,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사인 은행은 중앙회 내지 회원조합에 대하여 파생상품거래 등 지원성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동 사업에서 촉발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중앙회에 지급하고 필요 내부유보액(자본)까지 부담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 및 필요 내부유보액 등의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인 중앙회와의 배당 협의시에도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지주 중장기 자본계획 수립시에도 고려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은행의 중앙회 내지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성 사업에 대하여 농지비 및 필요 내부유보액 등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적정히 지원하고, 배당액(배당성향) 및 내부유보액과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대주주(중앙회)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중장기자본계획」 수립시에도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적정한 배당정책 수립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강화 등 이사회 운영 개선

지주는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11) 등에 의해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임추위, 보수위 등)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시 적극적 요건(전문성)이 선언적이고, 후보군 압축절차가 부재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이 일부 기재되지 않아 후보군 압축, 최종후보 선정 등 선정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선임 후 임추위·보수위에 소속되어 그 역할이 그룹 내 주요 인사 및 성과평가 등에 편향된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감시 책임 등 이사회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구체적 자격기준(전문성) 및 전문성 스코어링 체계를 마련하고, 후보군 압축 절차 의무화·최종 임추위 복수 후보 선정 등 선임 절차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內 내부통제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감시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농협지주 내부제보(레드휘슬) 운영방안 개선

지주 내규 「내부제보 준칙」에 의하면 지주는 내부제보 수집과 제보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주 회장 직속으로 내부제보 운영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내부제보 운영조직은 우편, 모사전송, 전화, 내부통신망,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내부제보 내용을 접수해야 한다.

이에 지주는 지주 내 경영리스크 감소 및 조직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해 내부제보 제도의 일환으로 레드휘슬 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으며, 레드휘슬 관련 실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레드휘슬 시스템을 통해 지주 내부제보를 접수	➡	농협중앙회 레드휘슬 담당자가 지주 소관 내부제보를 이첩	➡	지주 A부는 이첩받은 내부제보를 처리

현재 지주 및 동사 자회사의 레드휘슬은 상기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접수·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농협중앙회가 1차적으로 레드휘슬 제보내용을 열람·판단한 후 지주 또는 동사 자회사에 관련 제보내용을 이첩하고 있어 지주 및 동사 자회사 관련 내부제보 내용이 외부 회사인 농협중앙회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각 자회사들과 협의하여 금융부문(지주 및 동사 자회사 등)의 레드휘슬을 농협중앙회와 분리하여 직접 접수·관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내부거래 관련 경영공시 업무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지주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오류가 없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는 자회사 간 신용공여 내역 중 '내부거래' 항목에 기재할 내용을 '기타거래' 항목에 중복하여 기재하거나, 주요출자자인 중앙회와의 임차료 관련 거래내역에 대해 임차료 금액을 과다하게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업무 수행시 미흡한 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경영공시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상호금액 대사를 철저히 하고,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유의사항을 「경영공시 작성 매뉴얼」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지주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개선

① 지주는「감사업무준칙」및「준법감시업무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사고내역을 보고받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협은행은 지주 A부에 사고내역 보고를 다수 누락하였고, 농협금융지주㈜ A부는 은행의 사고보고 내용에 대해 금융사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② 지주는 내규「내부통제규정」,「리스크관리규정」등에 따라 자회사의 내부통제 체계·위험관리업무 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농협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보고받고 있으나,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농협은행 등 자회사 등에 대해 매분기 리스크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경쟁사 대비 주요 건전성지표 및 신용·운영·유동성리스크 수준 등으로 평가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정기적인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갖추어 자회사 보고사항의 누락 여부 및 금융사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자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사항 및 이행실적 등을 전산 관리하고, 금번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자회사 점검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번 검사에서 확인된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흡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리스크관리 실태평가에 동 미흡점을 반영하여 다른 자회사 점검에 활용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금 조달 및 운용관리 절차 개선

지주 내규「자금관리준칙」제7조에 따라 자금의 조달·운용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동 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려한 연간·월간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상환액의 증가로 고정비용보상율 및 보통주배당보상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위기상황 시 자회사에 자금공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거액배당 또는 관리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등 장기적으로 그룹 차원의 자금 조달·운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표 외에 고정비용보상율 및 보통주배당보상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간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 수립기준 및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6) 통합위기상황분석시 분석대상 지표 보완

지주 내규「통합위기상황분석업무방법」에서는 매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룹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고, 발생가능한 취약성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동 방법서에 의거하여 지주는 규제자본, 위험자본, 당기손익 등에 대하여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이 4대 시중은행 대비 열위인 상황임에도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기상황시 지주 자본이 감소하거나, 총위험노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는 매년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농업지원사업비, 배당 등 기본자본 감소요인과 총위험노출액 변동요인이 단순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동 비율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